

2. 교원 인사규정

제정일 : 1996년 10월 20일

개정일 : 2020년 01월 22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베뢰아아카데미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부응하여 연구, 교육 봉사하는 교원의 임면, 자격, 신분보장, 징계 등에 적용할 교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속) 교원은 이 대학에 소속하여야 한다.

제4조 (직위) 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삭제>로 한다.<2013.2.5.>

제5조 (종류) 교원은 일반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분류한다.<개정 2013.2.5.>

제6조 (겸직)

- ① 이 대학의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 ② 이 대학의 교원이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정년) 이 대학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제7조의 2 (명예퇴직)

- ① 이 대학교에 20년 이상 근속한 교원이 정년 전에 퇴직을 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명예퇴직의 대상, 범위 및 수당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8조 (인사위원회)

- ① 교원 인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학교법인베뢰아아카데미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인사협의회

제9조 (인사협의회) 총장은 교원 인사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인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구성) 인사협의회는 <삭제>,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2.5.>

제10조의 2 (승진평가) 인사협의회는 총장이 자문을 구할 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후보자를 평가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6.1.29., 2020.1.22. >

제4장 임용·승진

제11조 (임용의 종류)

- ① 교원은 학교법인 학교법인베뢰아아카데미학원 정관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 ② 신규 임용의 경우에는 첫 해 2년을 기간으로 임용하고, 그 이후 임용 기간 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삭제 2013.2.5.>
 2. 조교수는 4년 단위로 임용한다.
 3. 부교수는 6년 단위로 임용한다.
 4. 교수는 7년 단위로 임용한다.
- ③ 교원은 계약 기간 내에도 승진할 수 있다. 임용기간 중에 승진 된 경우에는 승진 시점부터 임용 기간이 다시 시작한다.<개정 2020.1.22.>
- ④ 계약 기간 내에 정년이 될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2.5.>
- ⑤ 비전임교원은 직위와 기한을 정하여 총장이 계약하여 임용한다.<개정 2013.2.5.>
- ⑥ 위의 2항 각호의 재임용기간 중 여교수 출산시 재임용 기간은 1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2.5.>
- ⑦ 동일 직급에서의 재임용은 1회에 한하며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한다.<신설 2020.1.22.>

제12조 (임용 시기)

- ① 전조 각항의 임용은 매 학기초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용 계약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대우 전임교원의 임용) <삭제><본조삭제2013.2.5.>

제14조 (자격)

- ① 이 학교의 교원의 임용 및 승진을 위한 최소한도의 교육 연구경력 년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5. / 2016.1.29., 2020.1.22.>

직위	임용을 위한 신학석사학위 취득 후 최소한도의 교육연구년수	재임용을 위한 최소근무년수	승진을 위한 최소근무년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조 교 수	4	2+4	2+4
부 교 수	6	6	6
교 수	10	7	-

② 신규 임용 후 첫 번째 직위 승진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년수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2.>

제15조 (승진)

- ① 교원은 전조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구비하고, 연구업적과 교육 및 학교 발전에 대한 공헌, 교육자 윤리도덕 실적을 통합한 점수를 계수하여 승진심사에 반영한다. <개정 2016.1.29., 2020.1.22.>
- ② 승진에 대한 절차는 제21조(재임용·승진의 절차)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0.1.22.>

제16조 (승급) <삭제><본조삭제 2013.2.5.>

제17조 (최장 근무년수) <삭제><본조삭제 2013.2.5.>

제18조 (년수계산)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① 교육경력과 연구 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기간 중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은 그 하나만을 계산한다.
- ③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연구 기간은 각각 최장 5년 또는 2년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박사학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따로 2년의 연구년수를 가산할 수 있다.
- ⑤ 대학의 각 연구소 또는 그 밖의 연구소에서의 연구기간은 그 연구소의 학문적 권위, 연구자의 연구 업적 및 내용을 감안하여 인정하되 그 전 기간을 연구년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⑥ 실무기관에서의 근무년한은 근무자의 직책, 전공분야, 기관의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되 최고 그 3분의 2까지를 연구년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⑦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전임교원으로서의 교육기간은 이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⑧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강사로서의 교육 기간은 그 2분의 1까지를 교육경력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업적평가) 전조의 교원업적평가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교육 및 학교 발전에 대한 공헌) 교육 및 학교 발전에 대한 공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9., 2020.1.22.>

구분	세부항목	배점
교육	1. 매학기 기본시수학점 강의 2. 매학기 강의시간 준수 3. 석,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 지도 4. 멘토링 및 동아리 활동 지도 5. 수업계획서 6. 수업평가	각 항목 10점 총 60점
학교발전	1. 보직 활동(본교 부서장, 부속 및 부설 기관 장) 2. 본교 홍보 및 발전 관련 프로젝트 지원 3. 위원회 활동(교원인사위원, 교무위원회, 징계위원회 등)	각 항목 10점 총 30점

제20조의 1 (교육자 윤리도덕) 교육자 윤리도덕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1.22.>

구분	세부항목	배점
교육자 윤리도덕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윤리와 도덕 의식 1. 상식적인 사고 또는 체제전복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강의나 개인적으로 또는 외부에서 일반인에게라도 강의하거나 주입하는 행위 2. 업무관련 정보 비밀 발설 3.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폭력 및 성희롱 등의 행위 4. 동료교원, 직원 및 학생에게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에 대해 부적절한 유포, 비난, 차별 행위 5. 사적인 행동 및 개인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대학을 대표하는 인상을 주어 오해하게 하는 행위	각 항목 20점 총 100점

제21조 (재임용·승진의 절차)

- ① 임용과 재임용 또는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9.>
- ② 총장은 필요시 인사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승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
- ④ 재임용, 승진 대상 교원들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임 교원 재임용 승진 신청서” (별표 제1호), 각자의 연구 업적과 교육 및 학교 발전에 대한 공헌실적을 기준표 대로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16.1.29., 2020.1.22.>
- ⑤ <삭제 2016.1.29.>
- ⑥ 만료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재임용·승진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⑦ 인사위원회는 재임용·승진 심사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은 “의견진술서” (별표 제2호)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신설 2020.1.22.>
- ⑧ 재임용·승진 심사를 거친 당해 교원에 대해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임용 결정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
- ⑨ 해당 교원을 재임용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0.1.22.>
- ⑩ <삭제 2020.1.00.>
- ⑪ <삭제 2020.1.00.>
- ⑫ 단, 위의 절차에 대해 교무처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재임용 혹은 승진심사에 해당되는 교수 자신이 교무위원 1인 혹은 대학위원회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재임용 혹은 승진심사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건의 할 수 있다. <신설 2016.1.29.> <개정 2020.1.22.>

제21조의1 (심사기준)<본조 신설 2016.1.29.>

- ① 조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조교수 6년차에 120점 이상이 되면 재임용 후보자(candidate)가 된다.
 - 2. 재임용 후 3년 안에 연구업적 점수를 20점 이상 취득하면 부교수로 승진한다.
 - 3. 기간 내에 심사기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전임교수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해임된다.
 - 4. 조교수 6년 차에 140점 이상이 되면 승진 후보자(candidate)가 된다.
- ② 부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부교수 6년차에 150점 이상이 되면 재임용 후보자(candidate)가 된다.
 - 2. 재임용 후 3년 안에 연구업적 점수를 20점 이상 취득하면 교수로 승진한다.
 - 3. 기간 내에 심사기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전임교수로서 자격을 상실하고 해임된다.
 - 4. 부교수 6년차에 170점 이상이 되면 승진 후보자(candidate)가 된다.
- ③ 제1항의1호·제4호와 제2항의1호·4호에 해당하는 재임용·승진 후보자 기준 점수는 우선적으로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정하는 교육자 윤리도덕 평가 항목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후보자 고려가 가능하며, 총 점수가 기준 점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육자 윤리도덕 평가항목이 60점에 미치지 못하면 재임용·승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2.>
- ④ 재임용·승진 심사는 연2회 실시하며, 심사대상자는 연1회를 초과하여 심사받을 수 없다. <신설 2020.1.22.>

제5장 휴직·복직

제22조 (사유) 학교법인베뢰아아카데미학원 정관 제4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있다.

제23조 (휴직 기간의 만료) 휴직 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

제24조 (복직 교원의 의무) 복직 교원은 휴직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 학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제25조 (휴직 중 급여액의 반환) 제23조에 의하여 자동 면직된 교원과 제24조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교원은 휴직 중 급여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 (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정관 제42조에 정한대로 한다.<개정 2013.2.5.>

제27조 (절차) 휴직·복직은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명할 수 있다.<개정 2013.2.5.>

제6장 징계

제28조 (징계) 징계는 학교법인베뢰아아카데미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 (절차) 징계는 제1차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장 연구출장

제30조 (연구출장)

① 연구출장이라 함은 출장 기간이 방학 중 60일 이상 또는 개강 중 30일 이상의 국내 또는 해외 연구 등을 위한 출장을 말한다.

② 조교수 이상의 교원은 국내외에서 연구 수행을 위하여 총장에게 연구출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2.5.>

③ 이외의 사항은 교원 해외 연수 규정에 준한다.<본조신설 2013.2.5.>

제31조 (자격)

① 연구출장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최소 계속 3년 이상 이 학교에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② 제2차 이상의 연구출장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전회의 출장 이후 최소 계속 3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라야 한다.

제32조 (연구출장 신청의 제한) 다음의 경우는 연구출장 신청을 할 수 없다.

- ① 휴직 교원 및 연구출장 교원의 수가 소속 학과 교원수의 3분의 1이 넘는 경우.
- ② 연구 출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33조(연구 출장 교원의 신분과 대우)

- ① 연구 출장 명령을 받은 교원은 이 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 ② 연구출장 전 이 학교에 6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원은 출장 제1차년에 한하여 봉급, 상여금 및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근무 연수가 3년 이상 6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반액을 지급한다.
- ③ 연구 출장 기간은 승진, 승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구출장 기간 중의 승진, 승봉은 유보한다.

제34조 (준용규칙) 제23조 및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은 연구출장 교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5조 (예외규정) 총장은 본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2015년 2월 28일 이전 재직 교원의 경우 다음 차 임용 및 승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모든 전임 교원에 해당 적용한다.

전임 교원 (재임용□ 승진□) 신청서

제출자	성 명		소 속 학 과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교명		최종취득학위 /전공	
	최초임용일		현직위임용일		임용만료일	

위 본인은 교원임용에 따른 교수업적 자체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연구분야 실적물에는 위조, 변조, 표절, 자기표절, 중복 사용,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 없으며 향후 위반한 실적물이 발견될 경우 (재임용·승진)의 취소나 징계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임을 서약하며 (재임용·승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_____ (인)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총장 귀하

의견진술서

제출자	성명		소속학과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교명		최종취득학위 /전공	
	최초임용일		현직위임용일		임용만료일	

년 월 일

교수재임용·승진 심사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